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

제출연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품질인증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

○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품질인증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심의 내용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이외에 품질인증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 (안 제3조 수정)

○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(안 제7조제5항 신설)

○ 농특산물의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성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판매 지원시책 추진 근거 설치 (안 제15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 05. 02 ~ 05. 22(21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조례 제 호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상표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상표법」 제41조에 따른”으로, “등록한”을 “등록한 품목과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판매촉진 및 홍보 등)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용자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

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

판매촉진 및 홍보품목 제공 대상 및 범위(제15조의2 제4항 관련)

대 상	범 위	방 법
① 농특산물 수출·입 관계자 및 임직원 ② 농특산물 유통 관계자 및 임직원 ③ 외교사절 및 우호 교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④ 유명 문화 예술인과 언론인 ⑤ 국내외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⑥ 평창군 관광 홍보관련자 ⑦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	본 조례에 의하여 인증마크 사용 승인된 품목	방문, 택배 등 제공 대상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----- ---------- 「상표법」 제41조에 따른 ---------- 등록한 품목과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---------- .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④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<신 설>	제15조의2(판매촉진 및 홍보 등) ① 군수는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	③ 군수는 사용자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④ 군수는 인증상표 승인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『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』(2009. 9)

Ⅲ. 위원회 정비 방안

② 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가이드라인 준수

▶ 기본방향 :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, 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위원회 남발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

▶ 위원회 구성

○ 전문적 지식•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• 위촉하되 성별• 지역• 직능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

- 공무원은 지나친 상위직급 책정을 지양하고, 민간위원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

□ 『지방자치법』 4

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•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•운영할 수 있다.

□ 『동법 시행령』

제80조 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 • 위원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
□ 『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

제46조(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·홍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·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, 조사,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